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신규대비표

페이지	현행(4-1판)	개정(5판)	비고
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후(1.20),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는 상황으로 위기단계 상향(2.24, 경계→심각) ○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참고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후(1.20),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는 상황으로 위기단계 상향(2.24, 경계→심각),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거리두기'를 지속 시행, 감염차단과 경제 활동을 병행하고자 거리두기 단계를 '생활속거리두기'로 전환(5.6.) ○ 이에 현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참고1)	
2	- 감염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 부여, 근무자 관리, 시설 환경관리,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체계를 유지토록 함	-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등* 지정,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 부여, 근무자 관리, 시설 환경관리,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체계를 유지토록 함	
4	② 해외 여행력 있는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2주간 출근 금지 (재택근무, 온라인 근무) 또는 시설 이용을 중단할 것 ○ 시설 관리자는 상기 ①,②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휴가를 주거나 휴관 조치를 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예시) 근로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어린이 등 : 결석시 출석 인정	② 해외 여행력 있는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2주간 출근 금지 (재택근무, 온라인 근무) 또는 시설 이용을 중단할 것 ○ 시설 관리자는 상기 ①, ②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휴가를 주거나 휴관(이용중단) 조치를 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예시) 근로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어린이 등 : 결석시 출석 인정	
4	□ 시설 이용자, 시설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 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교육	□ 시설 이용자, 시설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 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교육	

페이지	현행(4-1판)	개정(5판)	비고
5	☐ 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금지 , 가족에게 안내(SMS, 유선 전화 등) ○ (신설) ○ (신설)	☐ 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금지 , 가족에게 안내(SMS, 유선전화 등) * 면회, 외출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 면회 허용시기는 시설별로 정하도록 하고, 시설에서 정한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예외적으로 허용, 시설별로 면회 수칙 등 별도 마련.운영 * 노인요양시설 면회 허용 시기 및 수칙 등은 추후 별도 시행 ○ 외출은 ①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원), ②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장 출퇴근 등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해당 입소자는 별도 격리 생활공간 마련·운영	
5	○ 집단 행사, 교육, 소규모 모임, 국내외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 국내외 행사, 이벤트, 동호회, 취미클럽 및 회식 등	○ 집단 행사, 집합교육, 국외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 소규모회의, 국내출장 등 가능 *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7	(신설)	Ⅲ 이용시설 운영 재개 준비 등 ☐ (운영 재개 시점 등) ① 각 시설별 운영재개 사전준비사항(별도 안내 예정)에 따른 약 2주간의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② 지자체 별로 개별시설의 사전준비사항 점검 종료 후 운영 재개 시점 판단 (결정) ○ (운영 재개 前) 시설 휴관(원) 시 조치(Ⅱ-5) 사항에 따라 취약계층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유지 ○ (운영 재개 後) 시설별로 이용수칙 및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운영 ☐ (2020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을 시설 운영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 점검으로 진행 * 시설 자체점검('20.5.11.~5.29.) 실시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입력 완료	

페이지	현행(4-1판)	개정(5판)	비고
8	IV 지자체 협조사항 □ (시설 점검)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준수여부 등 점검 모니터링 지속 필요 등 - (신설)	IV 지자체 협조사항 □ (시설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 모니터링 지속 필요 등 - 특히, 이용시설 운영재개 전 시설별 사전준비사항 점검 실시	

페이지	현행(4-1판)	개정(5판)	비고																																																																																																																																																														
25	서식4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체크리스트 ○ 확인일시: 20 년 월 일 (요일) 시 ○ 확 인 자: 소속 _____ 이름 _____ (서명) <table> <tr> <th colspan="2">체크리스트</th><th colspan="2">해당함에 표시 예 아니오</th><th rowspan="2">비고</th></tr> <tr> <td colspan="5">협력체계(1)</td></tr> <tr> <td rowspan="2">비상연락체계 (격리시설-관할 보건소- 관할 시·군·구 및 사·도)</td><td>마련 및 현행화 하였는가</td><td></td><td></td><td></td></tr> <tr> <td>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가</td><td></td><td></td><td></td></tr> <tr> <td colspan="5">인력 배치 및 관리(10)</td></tr> <tr> <td colspan="2">건강관리책임자(의·노)가 지정되어 있는가</td><td></td><td></td><td></td></tr> <tr> <td colspan="2">직원관리(간병인, 방문객 등) 전담자 지정되었는가</td><td></td><td></td><td></td></tr> <tr> <td colspan="2">직원(간병인 포함) 명부와 건강상태가 작성 되었는가</td><td></td><td></td><td></td></tr> <tr> <td colspan="2">모든 직원의 일일 건강체크를 시행하고 있는가 (발열, 호흡기증상 등)</td><td></td><td></td><td></td></tr> <tr> <td colspan="2">모든 직원대상 감염병예방관리 교육을 수행하였는가</td><td></td><td></td><td></td></tr> <tr> <td colspan="2">모든 직원이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를 상시 착용하고 있는가</td><td></td><td></td><td></td></tr> <tr> <td colspan="2">직원 동선에 맞춰 개인보호구가 상시 비치되어 있는가</td><td></td><td></td><td></td></tr> <tr> <td colspan="2">개인보호구를 잘의하고 새롭게 착용하는 장소가 별도 지정되어 있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td><td></td><td></td><td></td></tr> <tr> <td colspan="2">격리실이 구비되어 있는가</td><td></td><td></td><td></td></tr> <tr> <td colspan="5">기타 특이사항</td></tr> <tr> <td colspan="5">(자유기술)</td></tr> </table>	체크리스트		해당함에 표시 예 아니오		비고	협력체계(1)					비상연락체계 (격리시설-관할 보건소- 관할 시·군·구 및 사·도)	마련 및 현행화 하였는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가				인력 배치 및 관리(10)					건강관리책임자(의·노)가 지정되어 있는가					직원관리(간병인, 방문객 등) 전담자 지정되었는가					직원(간병인 포함) 명부와 건강상태가 작성 되었는가					모든 직원의 일일 건강체크를 시행하고 있는가 (발열, 호흡기증상 등)					모든 직원대상 감염병예방관리 교육을 수행하였는가					모든 직원이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를 상시 착용하고 있는가					직원 동선에 맞춰 개인보호구가 상시 비치되어 있는가					개인보호구를 잘의하고 새롭게 착용하는 장소가 별도 지정되어 있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격리실이 구비되어 있는가					기타 특이사항					(자유기술)					서식4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체크리스트 ○ 확인일시: 20 년 월 일 (요일) 시 ○ 확 인 자: 소속 _____ 이름 _____ (서명) ○ 시 설 명: () <table> <tr> <th colspan="2">체크리스트</th><th colspan="2">해당함에 표시 예 아니오</th><th rowspan="2">비고</th></tr> <tr> <td colspan="5">협력체계(1)</td></tr> <tr> <td rowspan="2">1. 비상연락체계 (격리시설-관할보건소- 관할 시·군·구 및 사·도)</td><td>1.1. 마련 및 현행화 하였는가</td><td></td><td></td><td></td></tr> <tr> <td>1.2.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가</td><td></td><td></td><td></td></tr> <tr> <td colspan="5">준수사항(8)</td></tr> <tr> <td colspan="2">2.1. 의심증상 확인, 출입통제 등 시설별 감염관리책임자 지정</td><td></td><td></td><td>구분: 감염관리책임자</td></tr> <tr> <td colspan="2">2.2. 자원봉사자·방문자 등 시설 출입 금지</td><td></td><td></td><td></td></tr> <tr> <td colspan="2">2.3. 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금지, 가족에게 안내 (※ 생활시설만 해당)</td><td></td><td></td><td></td></tr> <tr> <td colspan="2">2.4.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 체크 매일 2회(발열체크 등) 실시 및 기록</td><td></td><td></td><td></td></tr> <tr> <td colspan="2">2.5.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배제(출근금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 ▲입소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하고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td><td></td><td></td><td></td></tr> <tr> <td colspan="2">2.6.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 철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소독제 사용, 충분한 손씻기) 실시 후 활동 시작</td><td></td><td></td><td></td></tr> <tr> <td colspan="2">2.7. 시설 내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등 위생관리 철저</td><td></td><td></td><td></td></tr> <tr> <td colspan="2">2.8. 사회적(생활 속) 거리 두기와 접촉 최소화 적극 참여, 집단행사·집합교육 연기 또는 취소 등</td><td></td><td></td><td></td></tr> <tr> <td colspan="2">2.9. 격리실이 구비되어 있는가? (이용시설 : 대기공간 / 생활시설 : 격리실)</td><td></td><td></td><td></td></tr> <tr> <td colspan="5">기타 특이사항</td></tr> <tr> <td colspan="5">(자유기술)</td></tr> </table>	체크리스트		해당함에 표시 예 아니오		비고	협력체계(1)					1. 비상연락체계 (격리시설-관할보건소- 관할 시·군·구 및 사·도)	1.1. 마련 및 현행화 하였는가				1.2.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가				준수사항(8)					2.1. 의심증상 확인, 출입통제 등 시설별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구분: 감염관리책임자	2.2. 자원봉사자·방문자 등 시설 출입 금지					2.3. 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금지, 가족에게 안내 (※ 생활시설만 해당)					2.4.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 체크 매일 2회(발열체크 등) 실시 및 기록					2.5.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배제(출근금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 ▲입소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하고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2.6.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 철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소독제 사용, 충분한 손씻기) 실시 후 활동 시작					2.7. 시설 내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등 위생관리 철저					2.8. 사회적(생활 속) 거리 두기와 접촉 최소화 적극 참여, 집단행사·집합교육 연기 또는 취소 등					2.9. 격리실이 구비되어 있는가? (이용시설 : 대기공간 / 생활시설 : 격리실)					기타 특이사항					(자유기술)					
체크리스트		해당함에 표시 예 아니오		비고																																																																																																																																																													
협력체계(1)																																																																																																																																																																	
비상연락체계 (격리시설-관할 보건소- 관할 시·군·구 및 사·도)	마련 및 현행화 하였는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가																																																																																																																																																																
인력 배치 및 관리(10)																																																																																																																																																																	
건강관리책임자(의·노)가 지정되어 있는가																																																																																																																																																																	
직원관리(간병인, 방문객 등) 전담자 지정되었는가																																																																																																																																																																	
직원(간병인 포함) 명부와 건강상태가 작성 되었는가																																																																																																																																																																	
모든 직원의 일일 건강체크를 시행하고 있는가 (발열, 호흡기증상 등)																																																																																																																																																																	
모든 직원대상 감염병예방관리 교육을 수행하였는가																																																																																																																																																																	
모든 직원이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를 상시 착용하고 있는가																																																																																																																																																																	
직원 동선에 맞춰 개인보호구가 상시 비치되어 있는가																																																																																																																																																																	
개인보호구를 잘의하고 새롭게 착용하는 장소가 별도 지정되어 있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격리실이 구비되어 있는가																																																																																																																																																																	
기타 특이사항																																																																																																																																																																	
(자유기술)																																																																																																																																																																	
체크리스트		해당함에 표시 예 아니오		비고																																																																																																																																																													
협력체계(1)																																																																																																																																																																	
1. 비상연락체계 (격리시설-관할보건소- 관할 시·군·구 및 사·도)	1.1. 마련 및 현행화 하였는가																																																																																																																																																																
	1.2.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가																																																																																																																																																																
준수사항(8)																																																																																																																																																																	
2.1. 의심증상 확인, 출입통제 등 시설별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구분: 감염관리책임자																																																																																																																																																													
2.2. 자원봉사자·방문자 등 시설 출입 금지																																																																																																																																																																	
2.3. 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금지, 가족에게 안내 (※ 생활시설만 해당)																																																																																																																																																																	
2.4.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 체크 매일 2회(발열체크 등) 실시 및 기록																																																																																																																																																																	
2.5.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배제(출근금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 ▲입소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하고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2.6.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 철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소독제 사용, 충분한 손씻기) 실시 후 활동 시작																																																																																																																																																																	
2.7. 시설 내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등 위생관리 철저																																																																																																																																																																	
2.8. 사회적(생활 속) 거리 두기와 접촉 최소화 적극 참여, 집단행사·집합교육 연기 또는 취소 등																																																																																																																																																																	
2.9. 격리실이 구비되어 있는가? (이용시설 : 대기공간 / 생활시설 : 격리실)																																																																																																																																																																	
기타 특이사항																																																																																																																																																																	
(자유기술)																																																																																																																																																																	